

# 우리나라 女性の 法的地位와 家族關係的 見地에서 본 濟州道の 蓄妾의 慣行

The legal position of women in korea and a study of family  
relationships with the concubinage custom of Che Ju province

濟州大 李 且 淑  
Cha Suk, Lee

男子同權을 원칙으로 하는 近代法에서는 男性的 法的地位와 女性的 法的地位에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各國의 立法例를 볼 때 그 차이점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日本의 依用民法時代(舊民法時代)는 남녀의 法的地位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니, 新民法이 制定實施되어 舊民法에 비하여 女性的 法的地位는 비약에 가까운 향상을 보았다고는 하나, 朝鮮 5百年을 綿綿히 흐르고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儒敎 정신은 女性的 法的地位를 인정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감을 금할 수 없다. 筆者는 여성인 故로 女性的 法的地位에 대하여는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正義感 또한 대단하다고 자처하는 바이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이 한정된 지면에 일일이 例擧할 수는 없겠으나 몇가지 문제를 다루어 男性的 협조와 女性的 자각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憲法 第8條에는 「모든 國民은 法律 앞에 平等하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身分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다름 아닌 女性的 法的地位가 憲法上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法的保障을 歷史적으로 고찰할 때 어느 때에 起源하였느냐. 멀리 原始時代의 母系社會에서는 女性的 지위가 男性的 지위에 우월하여 一妻多夫制가 되어 있어 자녀의 姓도 母系를 따른 일이 있었고 지금도 西藏 기타의 未開國家에 이 一妻多夫制의 遺風이 남아 있기는 하나 그후 家父長制 가족 제도의 정비에 따라 男性的 지위가 異常肥大하여져 家長은 광대한 莊園을 소유하여 絶對적인 財產權者로서 妻子는 물론 수명의 妾과 많은 奴婢까지도 이에 예속되어 絶對적인 家長權에 복종하고 被扶養者로서의 위치를 固守하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佛蘭西革命後 歐美各國에서는 많은 權利章典이 續續 제정되고 또한 產業革命後 企業 제도의 발달은 많은 女性 노동자와 소년 노동자를 필요로 하여 이로 인하여 女性이 경제능력을 획득함으로써 그 지위는 急進의으로 향상되기에 이르렀다. 즉 法的地位向上이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一大變革을 가져온 것은 甲午更張이란 역사적인 轉換期의 來到이다. 日人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 간섭하게 되어 우리 가족 제도에서 一夫多妻制인 蓄妾이 후진 국민의 그릇된 사고 방식에서 나온 陋習이라 하고 戶籍法上 처의 入籍을 제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한도 先祖代代로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蓄妾의 악습을 근절시키기에는 너무나 무력하였는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蓄妾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으니 여성의 法的地位는 文書上에만 존재하였을 뿐 그 實에 있어서 말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에 따라 開化의 風潮가 물결치고 日本이 식민지 정치는 했으나 사회 제도나 문화면에 寄與한 공과는 일단 인정해도 無妨하다 할 것이니 이에 영향받은 바 많았을 것이며 해방 후 선진 민주 국가에 힘입은 바 지대하며 건국 이래 법률의 專門家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정으로서 우리나라 여성의 法的地位도 외국 여성의 法的地位와 같이 憲法上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 憲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法的地位는 과연 各實 共히 남성의 法的地位와 동등한가 생각하여 보자.

우선 民法規定을 볼 때 戶主相續權은 第一順位가 直系卑屬 長男子이며 (984條) 財産相續에 있어서는 法的相續分은 아들은 長男인 경우는 1.5, 貳男 이하는 1의 비율이요, 딸은 未婚인 경우는 아들의 相續分의 2분의 1이고 동일 家籍內에 있지 않은 즉 出家하여 夫家에 入籍한 딸은 아들의 相續分의 4분의 1이며 妻는 未婚인 딸과 同一하게 한 點(1000條) 또한 親權의 행사는 第一次的으로 父가 하고 父가 없거나 父가 親權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母가 親權을 행사하며 (909條), 再嫁한 母는 親權을 상실하게 되고 (924條), 再婚에 있어서는 婚姻이 解消된 後 여자에게만 6個月이란 寡居 기간을 둔 점 (811條), 養子制度에 있어서는 妻가 있는 자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874條1項)라는 규정 등 이는 法은 萬人 앞에 평등하다는 憲法精神에 違背될 뿐 아니라 심히 時代逆行的이며 부당한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戶主相續에 있어 第一順位를 直系卑屬으로 한다면 자녀가 數人일 時 장녀가 장남보다 년상이라면 마땅히 딸에게 戶主相續을 시켜야 할 것이며 財産相續에 있어서 장남의 法的相續分에 5할을 加算한 이유는 先祖의 奉祭祀를 위하여 소요되는 經費條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아들과 딸의 相續分에 差等を 두었다는 점은 그 근거를 出嫁外人이란 관념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보수적이요 딸에게 沒人情한 규정이며 妻의 相續 순위를 子女와 同順位로 한 점은 一見하면 여성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其 相續分에 있어 未婚女와 동일하게 한 점은 역시 不平等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親權의 행사는 부모가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할진대, 어찌서 一次的으로 父가 하며 父가 없거나 父가 있어도 親權을 행사할 수 없을 時(父가 心神喪失, 行方不明 또는 長期旅行 등의 경우)에 한하여 母가 할 수 있느냐? 이는 父의 비중을 무겁게 보고 있다고는 可히 이해가 가나 그 근

거를 어디에 두었는가 疑訝心을 씻을 길이 없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여 두고 再婚한 母에게서만 親權을 박탈하고 再婚한 父에게는 여전히 親權을 부여했으니 이래도 男女同權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있어 母는 再婚을 하더라도 前婚關係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뼈저리게 母性愛가 작용하고 나아가서는 그 측은한 마음에서 그 자녀에 대한 慈愛心이 더하여지기 마련이지만 父는 前妻所生子를 두고 他女人과 再婚하여 前妻所生子에게 온갖 학대와 악의의 遺棄를 자행하고 있음은 우리의 눈으로 얼마든지 보아오고 있다. 그 유명한 예가 數年前의 李某陸軍將星의 實子虐待事件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再婚時 여자에게만 6個月이란 寡居期間을 두었는데 이는 여자의 특수한 생리적 조건으로 자녀 出産時의 父의 推定 문제 등을 참작했음은 능히 알 수가 있으나 남성은 妻와 死別 내지 離婚後 그 翌日에 재혼하더라도 道義的 倫理的으로도 하등 무관하며 前妻에 대한 애정을 그렇게도 쉽게 깨끗이 잊을 수 있단 말인가?

養子制度를 보면 妻가 있는 者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874條1項)고 했는데 이것은 夫婦가 養親이 되는 경우나 養자가 되는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妻의 부재, 心神喪失, 行方不明 같은 경우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는 夫一方이 夫婦 쌍방의 名義로 養子를 할 수 있고 또 養자가 될 수 있다.

舊法에서는 妻는 入養에 대하여 關與權이 없었으나 남녀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夫婦共同制를 채용한 것이다.

그러나 配遇者라고 하지 않고 妻라고 하였음은 아직도 완전히 夫中心主義를 止揚하지 못한 것이다. 夫가 心神喪失, 行方不明, 長期旅行 등일 경우 妻 一方이 夫婦 雙方의 名義로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은 확실히 처의 위치가 부의 위치에 미치지 못함을 揭示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婚姻의 효과로서 妻는 夫家에의 入籍을 원칙으로 하고(826條) 夫婦의 누구에게 屬한 것인지 不明한 財産은 夫의 特有財産으로 推定하였으며(830條2項) 夫婦의 공동 생활비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夫의 부담으로 하였다(833條). 또 婚姻하면 夫婦는 상대방의 血族과의 사이에서 姻戚關係가 생긴다. 즉 夫는 妻의 父母와 妻는 夫의 8寸以內의 父系血族 4寸以內의 母系血族과 親族이 된다(777條3~5). 그리고 舊法대로 繼母와 前妻所生 사이에는 繼母子 관계, 嫡母와 庶子 사이에 嫡母庶子 관계가 생긴다(773條, 774條). 그러면 이 規定이 과연 타당한 규정인가 생각해 보자. 혼인하면 妻는 夫家에의 入籍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血統을 존중하는 우리나라에서 불가피하다손치더라도 所屬不明財産을 夫의 特有財産으로 推定한 것은 家는 夫中心임을 揭示한 것이고 夫婦의 共同生活費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夫가 함은 男尊女卑, 女必從夫의 從屬的 위치를 말하여 주며 혼인으로 인한 姻戚關係의 발생은 夫는 단 妻父母에 한하고 妻에 대하여는 複雜하고 수많은 姻戚關係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또한 女必從夫의 威壓을 준 것이다.

그리고 繼母子 관계, 嫡母庶子 관계를 인정한다면 妻의 前夫所生子인 加擗子와의 사이에 繼父子 관계를 인정하는 規定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夫婦共同生活의 場所(居所) 選定權을 夫에게 부여함도 女必從夫의 관념에서 나왔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憲法이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라는 규정에 違背되었다고 할 수 있다. 夫婦平等은 相互를 人格者로서 인정한다면 지극히 당연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우리 法律上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음은 우리나라의 법률과 사회가 얼마나 家父長制的인가를 단적으로 말하여 주는 것이다.

法이 현실과는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와 같이 종래의 관습과 타협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法이 이렇게 姑息의이고 후진적인 현실에 타협하다가 언제까지도 民主化의 길은 멀다. 法은 현실과 지나치게 멀어져서는 안되나 그 이념으로 하는 것과 모순하는 현실의 規範意識을 조장하는 것은 避하여야 하지 않을까?

다음은 우리 民法의 離婚制度를 볼 때 協議離婚(834條)과 裁判離婚(840條)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外國의 離婚을 전연 인정치 않거나 또 裁判離婚만을 인정하는 제도에 비한다면 여성의 離婚의 자유를 허용하는 進一步한 法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이나 離婚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를 어떻게 補償할 수 있겠는가? 물론 離婚으로 인하여 妻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 경우는 夫는 賠償責任을 지고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金錢으로 補償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夫가 과연 자신의 不動產, 動產 및 수입을 참작하여 어느만큼 양심적으로 慰藉料를 지불하여 줄 것인가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일이다.

그 이유는 有子生女한 妻를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하여 及其他 離婚問題까지 야기시킨 자라면 그 人品을 높이 評價할 수 없고 그 행위에 있어서 신빙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事實問題로서 妻에게 慰藉料를 배앗길까 봐 사전에 自己名義의 재산을 他人名義로 고스란히 이전시켜 놓아 妻는 慰藉料를 청구는 했으나 夫의 재산이 全無하여 空手로 돌아서는 경우가 非一非再하다. 또 慰藉料를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額數는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法律問題이지만 夫와 離婚한 後 生計費 또는 子女養育費로 하기에 는 너무나 부족한 僅少한 경우가 있으니 우리 民法이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약자인 여성의 보호에 충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叙上과 如히 여성의 法的地位 향상을 위한 각 규정은 其實 裝飾的 規定에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혼인하면 夫婦는 상호간 정조의 의무가 있고 扶養協助의 의무가 있는데, 만일 어느 일방 또는 雙方이 이 의무를 저버리고 不貞한 행위를 하였을 時 刑法은 姦通罪를 적용하여 다 같이 罰하고 있으나 이 刑法上의 처벌이 우리 여성의 法的地位를 확보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어 왔는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 사회의 남성은 남성이란 性的 優越感을 함부로 가지는 나머지 이것이 자신의 不貞을 默過 내지는 助長책 주는 樣 法律上的 妻 이외의 여성과 불의의 관계를 맺음을 도리어 英雄의이고 男兒다운 행동으로 자처하고 있음을 볼 때 血管을 흐르고 있는 산피가 거꾸로 치솟으려고 하며 가슴 한복판에 자리잡은 正義感이 無言中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한다. 非嫡 出子女 出生申告에 있어서는 자녀의 私生子란 不利益을 모면시키려고 本妻의 意思如何에 관계없이 本妻의 所生인 양 出生申告를 하는데 이는 本妻의 立場에서 본다면 夫의 不貞行爲의 結果로 얻어진 他女人의 出産兒를 자기의 戶籍에 不實記載해야 하고 이에 따라 財産相續 문제 같은 不合理點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法律上的 妻를 두고도 不貞行爲를 저지른 데 대한 憎惡心마저 일어나는 것이다. 親族編에 있어 夫婦의 어느 一方의 死亡 내지 離婚後 再婚에 있어서는 其 禁婚範圍는 夫였던 者에게는 별로 제한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妻弟나 妻兄이었던 者하고도 혼인할 수 있겠는데 妻였던 者에게는 상당히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 여기에도 남녀의 심한 불평등한 法規定을 볼 수 있다.

이 以外에도 女性에게 不利益 不平等한 규정은 허다하니 우리나라 여성의 法的地位란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舊民法(依用民法)에 비하여 新民法이 여성의 法的地位 확보에 많은 關心과 노력을 기울인 점도 상당히 많으니 다음에 그 예를 몇 가지 記해 보고자 한다.

첫째, 戶主相續에 있어 舊法에 있어 相續順位를 直系卑屬男子, 直系尊屬女子, 妻, 家族인 直系卑屬의 妻, 家族인 直系尊屬女子로 하고 있었으나 新法은 直系卑屬女子의 順位를 第二 順位로 올리고 또 妻의 順位를 直系尊屬女子보다 先順位로 한다(984條)고 규정했으며, 財産相續에 있어 舊法과 財産相續은 戶主의 사망 기타 변경의 경우와 가족의 사망의 경우에 따라서 그 相續人은 분명히 상이하였다. 요컨대 戶主相續에는 반드시 財産相續이 따르고 被相續人이 戶主이었던 경우의 財産相續人은 바로 戶主相續의 順位자이었다. 그리고 家族死亡의 경우의 財産相續人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① 사망한 가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直系卑屬이 共同相續하였다(그러나 次男인 때에는 遺妻가 相續한다는 高等法院判決이 있었다). 直系卑屬이 없는 때에는 遺妻가 相續하였고, 直系卑屬이 없는 경우의 妻의 財産은 夫가 相續하였다.

② 사망한 가족이 미혼인 경우에는 父가 相續하고 父가 없을 때에는 戶主가 相續하였다.

③ 사망한 가족이 未婚의 直系卑屬인 경우에는 父가 相續하고 父가 없을 때에는 戶主가 相續하였다.

④ 寡婦의 財産은 直系卑屬이 相續하나 直系卑屬이 없을 때에는 戶主가 相續하였다.

⑤ 僧侶死亡의 경우에는 遺言에 의하여 遺產의 歸屬이 결정됨이 원칙이었으나 그밖에는 實子가 있더라도 上佐가 遺產을 承繼하였고 僧女死亡의 경우에도 대체로 동일하였다.

新法은 財産相續의 순위자를 被相續人이 戶主이건 가족이건 不問하고 直系卑屬, 直系尊屬, 兄弟姊妹, 8寸 이내의 傍系血族의 차례로 규정하였음은 다분히 民主化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舊法은 妻는 無能力者(未成年者, 心神喪失者 妻)로서 자기의 固有財産에 대하여도 其 管理權은 夫에게 있었으니 親庭에서 가지고 간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도 사용 收益 處分權이 없어 모든 것을 夫에게 일임한 결과로서 夫가 良心의인 着實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도 없으나 만약 放蕩한 非良心의인 惡人이라면 妻는 自己財産을 전부 빼앗기고 심한 경우는 夫家로부터 쫓겨나 일생을 불행 속에서 울어야만 했었다.

新民法은 이러한 모순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妻의 無能力制度를 철폐하고 자기 固有財産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으며 夫婦別産制度를 採擇하여 자기 명의의 재산은 언제까지나 固有財産으로서 만일 夫의 재산이 蕩盡되는 경우에도 妻의 財産은 夫의 債權者로부터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地位確保를 위해서나 가정의 生計維持面에서나 극히 당연하고도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세째로 우리나라 戶籍法은 妻는 혼인함으로써 夫家에 入籍은 하나 姓만은 각각 父系의 姓을 유지하게 되니(姓不變의 원칙) 이는 어느 정도 妻의 인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째 妻가 親家の 戶主相續權者인 경우의 入夫婚姻(876조)制를 신설한 점은 확실히 家父長制家族制度에 대한 破格的인 규정이며 女戶主保護의 法規定이라 할 것이다.

다음은 濟州道の 蓄妾의 慣行을 述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妾史와 妾의 종류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魚叔權의 《稗官雜記》에 보면 우리나라의 운수가 〈天三地八〉이기에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으며 한 남자가 두셋의 妾을 거느리고도 賤民들의 딸들은 홀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人類學者들은 女多男寡가 多妻나 多妾制의 원인은 될 수 없으며 蓄妾은 家父長制度에 있어 가능한 남자들의 횡포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기에 妾을 〈別室〉〈側室〉〈副室〉〈小室〉〈小家〉라고 劣等名詞로 불렀고 妾은 남편을 〈夫君〉 嫡妻를 〈女君〉이라 불러야 했으며 嫡孫에게는 奴婢가 상전의 자제를 대할 때와 같은 〈서방님〉〈도령님〉으로 불러야 했다.

庶子는 비록 士族家門이라도 〈半士〉〈左族〉〈四點배기〉〈不齒〉로 불리어 家門의 承統과 벼슬로부터 疎外當하였으니 近世朝鮮에서만 하여도 庶子에게는 堂上官 이상의 벼슬을 주지 않아 주어진 與件에서 社會의 榮達을 단념하고 道學과 文章으로 大成하는 者도 많았고 뜻을 잃고 放浪歲月로 일생을 마치는 者도 있었다.

金謹恭·宋翼弼 등의 道學, 魚叔權·楊士彥 등의 文章, 李山謙·洪季男 등의 忠義, 李齊家·徐湛修 등의 學問은 庶憤을 昇華시킨 〈벼슬 없는 榮光〉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趙光祖·李珥 등의 선구자들이 庶子解放을 부르짖었고 많은 上疏를 임금께 올렸으나 不許되었으며 그후 高宗 19년에 비로소 國家用人 何限貴賤 宣言으로 開化했지만 蓄妾에 대해

그 악제를 논한 선구자며 上疏며 임금은 하나도 없었다.

大儒 李栗谷·曹南溟 李晦齋도 蓄妾을 하였다니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蓄妾을 한 目的과 動機 등으로, 몇 가지 그 종류를 논하여 보면,

첫째 權妾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남편의 權을 농하여 富貴榮華를 누리는 多福한 妾이다. 朝鮮末 領相이던 權門 金左根에게는 羅州妓生인 妾이 있어 이 妾이 勢道가 당당했다는 이야기다.

둘째 節妾이란 것인데 夫君의 벼슬을 위하여 몸을 파는 犧牲派이다. 高宗 때 贊政 南廷皙은 內部大臣을 하기 위하여 愛妾蕉紅을 팔았다는 말은 유명하다.

셋째 宦妾이라는 것인데 이는 性不具者인 宦官의 아내와 內通하면 宦妾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宦妾은 扶養할 義務도 없고 宦官을 움직여 登科나 벼슬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네째 客妾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登科하고 錦衣還鄉하는 선비를 고을 벼슬아치나 돈 많은 집에서 환대하며 登科의 영화를 나누어 갖고자 집주인은 딸 하나를 골라 客房에 넣어 주었다. 이 客妾들은 純潔을 빼앗긴 채 親庭에서 閨房을 지키며 안타까이 서방님을 기다려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것이다.

다섯째 拾妾이라는 것인데 시집에서 소박맞은 여자가 친정에도 있을 사정이 못되는 경우 새벽녘에 머리 풀고 붓짐을 싸들고서 父母와 울며불며 헤어져 성황당 밖을 나가 최초로 만난 사람의 妾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여인을 본 남자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여자를 妾으로 맞아야 한다는 관습이 있었다.

여섯째 獻妾이라는 것인데, 官家에 訟事가 걸렸거나 죄를 지어 刑을 받았을 때 그 請託이나 免刑條件으로 官員에게 딸을 妾으로 바치는 것인데 인신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濟州道の 蓄妾史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 이러한 歷史를 가진 蓄妾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권층 남성의 횡포 내지 사치인지라 이러한 인물이 中央政府에서 政治波動으로 인하여 이곳 먼 섬으로 유배되어 음에 따라 蓄妾의 관습도 여기에 따라왔다는 역사적 배경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들이 孤島에서 孤獨을 달래고 신변의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이곳 여성과 동거하기에 이른 것이 蓄妾의 불가피한 원인이 되었겠고,

둘째로 早婚이나 強制婚 등으로 妻에 대한 愛情의 缺乏으로 인한 蓄妾(이것은 陸地와 같은 原因이지만)은 허다하게 있다.

셋째로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을 들 수 있는데, 이곳은 陸地部の 그 어느 지방보다도 여성의 경제 관념은 透徹하여 처음부터 남편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자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면서도 아무런 무리와 불평을 느끼지 않고 있으니 남편이 二重三重 생활을 하는데 과히 경제적 무리를 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다는 특수한 사정이다.

실제에 있어서 陸地部の 女大生과 濟州大 女大生の 思考方式의 차이점은 陸地部の 家政科

졸업생은 졸업하면 좋은 자리에出嫁함을 原則으로 알고 취직의 염려를 하는 것은 불과 몇 %에 지나지 않는데, 이곳의 여대생은 벌써 三學年쯤 되면 취직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는 故로 하도 이상하게 느껴져 家政科는 職業教育보다는 가정적인 賢母良妻를 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한즉 濟州道에서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취직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무능한 者로 지목되기 때문에 꼭 취직을 해야 하겠다는 말이다. 듣고 보니 남득이 가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아무리 깨끗한 옷차림의 여대생이라 할지라도 일단 가정에 들어가면 훌훌 벗어붙이고 작업복 차림으로 발일로부터 부엌일에 이르기까지 자기집 일은 자기의 손으로 해내는 것이 濟州道の 女人像이다. 그러한 것이 습관이 되어 이곳은 食母를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알기 때문에 꼭 家事助力者가 필요한 가정에서도 이를 구하지 못하여 불편한 일도 있다.

사실 우리 韓國女性中 濟州道女性과 같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여성은 일찌기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換言하면 여성이 너무나 혹사당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經濟面에만 몰두하다 보면 여성은 本意는 아니나 남편에 대하여 疏忽하기 마련이다.

원래 여성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그 힘에는 제한이 있어 무제한의 힘이 나올 수는 없다.

昨年 夏節에 海女(潛嫂婦)한테 그 生活相을 詳細히 알아본즉 작업 그 자체는 숙련되어 하등 난점이 없으나 작업 후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主婦로서의 食事準備를 비롯한 育兒, 洗濯 등 모든 것을 해야 하는 故로 피로한 몸을 잔신히 가누면서 하려면 참으로 괴롭다고 한다.

여성의 生活相이 이러하니 직장에서나 농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만족을 줄 만큼 충분한 <서어비스>가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니, 이것이 습관이 되어 한 가정의 夫婦로 同樂同苦를 하지 못하고 夫는 夫나름의 안식처를 家庭外的 외부에서 구하려고(남자의 外部安息處란 으레 서어비스거일들이 있는 곳이다) 이곳저곳의 유흥 장소를 찾다니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中 蓄妾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남성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 연약한 여성에게 무한정한 봉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筆者가 即感한 것은 극장이나 다방, 식당 등에는 으레 남성들이 대다수이고 여성들은 약간 눈에 띄어도 여성들끼리의 모임이니 夫婦同伴의 誼楚 좋은 한 雙을 보기를 참으로 드물다. 週末 또는 休日에도 家族同伴하여 놀이터를 찾는 것보다는 各 團體單位로 가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 있다. 서울의 夫婦像과 비교할 때 너무나 차이가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네째로 우리 여성의 무지에서 오는 그릇된 인식이다(이는 陸地部나 濟州道나 같다) 妾은 사회적으로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妾이 된 여성 자신은 고귀한 사랑으로 변명할 수도 있고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母性愛로도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나 妾의 所生子는



舊民法에서는 父가 認知한 者는 庶子로 私生兒보다는 上位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新民法에서는 庶子制度가 철폐되고 一律적으로 私生子가 되니 이 不利益, 不名譽를 면하려면 本妻의 승락 여부에 관계없이 本妻 所生子인 양 戶籍簿에 出生申告를 해야 되는데, 만약 본처가 감정적으로 나와 자기의 實子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戶籍簿에 出生申告를 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法律的으로 非嫡出子의 父를 정하는 인지에 의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혹 本妻가 이를 묵인하는 경우라도 胞胎하여 10個月間 갖은 고통을 겪고 死線을 넘어 출산한 자기의 귀여운 子女를 他女人의 出生子로 戶籍簿上 記載하여 그와 같이 행세하여도 憤하지 않다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本妻의 所生子로 戶籍簿上 記載되어 있는 子에 대하여는 生母는 親權조차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일 있는가?

자각 있는 여성은 이를 甘受할 수 없지 않을까?

끝으로 濟州道の 蓄妾의 內因으로 4·3事件이란 大虐殺事件의 결과로 여성의 수적 過剩狀態이다. 이 사건으로 얼마만큼 남성이 희생되었느냐 하면 심한 경우에는 한마을 百餘戶의 남편 아들 祭祀날이 같은 날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촌락에는 남자는 모조리 살해되고 寡婦만이 남아 있어 생활하고 있다. 또 이러한 옷지 못할 일화까지 남겼다. 共匪가 밤이면 나와 촌락에 사는 사람을 살해하는 故로 날만 저물면 집을 버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 피난하였는데 갓난 아이가 있어 울면 그 부락의 사람이 전멸하게 되므로 어머니는 단장의 쓰라림을 삼키면서도 아이를 방에 누어둔 채 성인들만이 피했다가 날이 밝아 집에 돌아와 보니 울다가 지쳐 죽은 것으로만 알았던 어린아이는 명이 길었는지 색색 코를 끌고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 아이들이 이미 성장하여 어엿한 大學生이 되어 어머니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옛이야기로 하고 있다.

참고로 1953年 以降의 濟州道 人口의 男女比를 표시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蓄妾家庭의 증가라는 결과가 되 1953年 以降의 濟州道人口 (男女別) 였다.

年 度	男	女	計
1953	139,346	152,538	291,884
1955	138,860	150,068	288,028
1960	131,554	150,166	281,720
1965	153,724	172,681	326,405
1967	164,494	182,322	346,816

여기 濟州道の 농촌과 도시의 蓄妾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숫자가 나왔다.

다음 表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濟州市內 一圓의 蓄妾狀況을 보면 82家口中 蓄妾家口가 10家口이고 그 원인이 本妻에게 아들을 두지 못하여 蓄妾한 家口는 單 1家口이

며 나머지 9家口는 이를 합리화시킬 만한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가 남성의 방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家口中에는 카바레 경영, 酒類販賣, 그릇店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家口가 3家口,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상 蓄妾한 家口가 一家口, 強制婚, 早婚으로 인한 애정의 缺乏이 1家口, 保守的인 사고 방식에서

濟州市內一圓의 蓄妾狀況

(西門橋에서 濟州商高 앞까지)

(82家口中 10家口の 蓄妾原因調査)

家 口	夫 妻 妾	年 齡	職 業	蓄 妾 原 因
1	夫 妻 妾	42 40 35	공 무 원 없 음 없 음	特別한 原因 없음 (一種의 虛榮(?))
2	夫 妻 妾	47 42 30	카바레경영 싸 전 카바레경영	카바레 경영을 하다가 여종업 원과 姦通
3	夫 妻 妾	38 35 26	酒類販賣 없 음 없 음	酒類販賣業上 많은 女性과交 際가 있기 때문
4	夫 妻 妾	亡 60 48	農 業 잡 화 상	強制婚으로 인 한 愛情의 缺乏
5	夫 妻 妾	50 45 40	木 手 미 장 원 없 음	妻가 夫에 對 하여 無關心(職 業女性인 故로)
6	夫 妻 妾	29 27 23	그 릇 店 없 음 없 음	偶然한 機會에 妾과 동서生活
7	夫 妻 妾	45 42 30	서울에서 서 무 고 무 신 店 없 음	事業의 便宜上 서울女子를 妾 으로 했음
8	夫 妻 妾	亡 65 57	없 음 없 음	保守的인 思考 方式에서
9	夫 妻 妾	51 45 40	잡 화 상 없 음 없 음	特別한 原因 없음
10	夫 妻 妾	49 47 40	공 무 원 싸 전 원 없 음	特別한 原因 없음

나온 家口가 1家口, 職業女性이 아내인 故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이 1家口,

나머지 3家口는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이러한 남성은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濟州道北濟州郡涯月面郭支里의 蓄妾狀況

(70家口中 11家口の 蓄妾原因調査)

家 口	夫 妻 妾	年 齡	職 業	蓄 妾 原 因
1	夫 妻 妾	67 67 63	農 業 " "	아들이 없어서
2	夫 妻 妾	57 57 45	農 業 " "	特別한 原因 없음
3	夫 妻 妾	76 70 65 62	農 業 " " "	元來가 品行이 端正치 못함
4	夫 妻 妾	50 49 45	農 業 " "	勞動力을 얻기 위하여
5	夫 妻 妾	41 37 33	事 業 農 業 " "	特別한 原因 없음
6	夫 妻 妾	48 45 35	商 農 業 " "	아들이 없어서
7	夫 妻 妾	50 49 35 25	農 業 " " "	元來 放蕩한 男子
8	夫 妻 妾	59 58 45	農 業 " "	特別한 原因 없음
9	夫 妻 妾	47 45 34	農 業 " "	餘裕 있는 經 濟的 條件 때 문?
10	夫 妻 妾	45 45 38	農 業 " "	一種의 虛榮?
11	夫 妻 妾	50 45 35	漁 農 業 " "	特別한 原因 없음

알 수가 없다.

구태여 원인을 캐어내자면 남성의 여성에 대한 慾求不滿 또는 奢侈心에서 우연히 蓄妾을 했다는 이론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을 두지 못하여 蓄妾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물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種族保存의 본능을 지니고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좀더 大局의인 面에서 고찰할 때 종족만 보존시킬 수 있다면 家庭生活의 안락은 과파되어도 무방하단 말인가?

또 그럼으로써 道義的, 倫理的으로 하등 상관이 없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姦通罪를 범하고 있다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만큼 양심이 鈍摩되어 있던 말인가?

그리고 종교적으로 奸淫하고 있다는 우스러운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다음에 카바레 경영, 酒類販賣, 그웃店 등 사람의 출입이 많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結婚式場에서 하느님 앞에 맹서하고 百年佳約을 한 그 아내를 두고 他女人에게 심사리 情을 옮기어 간다면 深深山中이나 孤島에 가서 一切 社交를 끊기 전에는 언제 어느때에 변심할지 모른다면 그러한 남성을 어떻게 남편이라고 믿고 奉仕하며 內助의 功을 세울 성의가 우려나겠는가? 이러한 남성일수록 아내에게 대한 기대는 無限大하여 조금이라도 기대에 어그러지는 일이 있으면 그 죄과를 針小棒大하며 온갖 공격을 해가며 폭행까지 하는 수가 있다. 百步를 양보하고 생각하더라도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있을 수 있겠나 하는 감이 든다.

強制婚, 早婚으로 애정의 결핍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애정이 우려나오지 않아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상당한 보상을 하고 離婚後 재출발을 할 것이지 두 눈이 떠 있는 아내를 두고 有妻取妾하여 심한 경우는 한 집에서 본처는 안방에 두고 妾을 데리고 건넌방에서 향락을 한다니 이는 본처를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재물에 물러나게 하려는 가장 卑劣한 수단이 아닌가?

보수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온 蓄妾의 경우는 앞서서도 말한 것과 같이 남성이란 性의 수월감을 함부로 가지는 나머지 자기는 아내 이외의 他女人과의 性생활을 茶飯事로 삼으면서도 아내에게는 필요 이상의 賢母良妻를 요구하는 沒廉恥한 徒輩라고 생각이 된다.

妻가 職業女性인 故로 남편에게 무관심한 경우를 말하자면 어느 여성을 막론하고 결혼하면 남편의 수입으로 요것 조것 장만해 가며 알뜰살뜰하게 살림이나 하고 귀여운 아기나 키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남편의 수입으로만은 부족을 느끼기에 補充을 하느라고 울며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아침 일찌기 직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린 것을 뿌리치고 나오는 어머니의 마음은 가슴을 도려낼 것같이 쓰러져 돌아서서 눈물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을 不滿으로 삼는다면 나가지 않을 만큼 경제적인 충족을 시킬 수는 없겠는가?

以外에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微妙한 원인도 있겠지만 默默不答하고 남편을 섬기며 아이들을 위하여 희생함을 天職으로 아는 우리 여성들에게는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불만이란 夫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妻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妻는 忍耐로써 이겨 나가고 자녀에 대한 慈愛로써 능히 해결해 왔다.

다음에 年齡으로 보면 대개가 40代 이상 層에 국한되어 있음을 볼 때 既成世代의 전근대적이며 보수적인 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직업으로 보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便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목과할 수 없는 것은 공무원도 蓄妾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大韓民國 공무원 중에도 蓄妾者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타인을 힐뜯기를 좋아하는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도 인심이 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농촌의 蓄妾狀況을 述해 보고자 한다. 앞의 농촌 蓄妾表는 涯月面 郭支里의 蓄妾家口 조사다.

이 表에도 나타난 것과 같이 농촌에서도 蓄妾이란 연령으로 보아 40代 이상으로 사업 내지는 상업, 기타는 비교적 부능에 속하는 남성들에 局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인은 아들을 보지 못해 蓄妾을 한 家口가 들뿐 그 외는 정당한 이유를 들 수 없는데 원래가 품행이 端正치 못한 경우가 2家口, 촌에서 일하는 노동력을 얻기 위한 경우가 1家口, 여유 있는 경제력으로 인하여 사치로 蓄妾한 경우가 1家口,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本妻에게 큰 결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蓄妾한 경우가 1家口, 其外 4家口는 특별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놀랄 만한 것은 妾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에겐 얼른 남득이 가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버릇이라는 것이 있는데 妾을 얻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라고나 해 둘 수밖에 없다.

以上 濟州市內 一圓과 촌락의 蓄妾狀況을 表해 보았는데 이는 陽性화된 숫자로 이외에도 陰性的인 蓄妾(即 요새 유행어가 된 靈號夫人=이는 경제적인 것은 무관계하고 오직 성생활만 같이 하는 여성)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 靈號夫人 문제는 청소년의 성문제와 함께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리라고 思料된다.

歐美의 先進國家를 위시하여 가까운 日本에서만 하더라도 이 문제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나라에도 이 思潮가 밀려와 청소년의 사고 방식은 40代 이상의 既成世代인 우리의 생각을 姑息的이라고 하고 성문제를 건전한 신체를 가진 남녀의 하나의 플레이로 간단히 생각해 치우는 경향이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識者間에 우려하는 바 크다.

이 시점에서 文敎部가 中高等學校에 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은 극히 다행이며 오히려

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성질서가 紊亂해지면 가정 생활이 파괴되고 사회 생활이 명랑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은 罷免이란 위협 때문에 陰性的인 蓄妾 내지는 이를 억제하고 있을 뿐이 위협만 없다면 좀더 성질서는 紊亂해질 것으로 안다.

이상 蓄妾의 실태를 記述해 보았는데 이 이상에도 各樣各色的 蓄妾이 있으리라 思料된다.

이와 같이 우리 先祖들은 蓄妾이 자신의 地位와 경제력의 誇示요, 豪傑男兒의 상징이요,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오인하여 本妻에게는 賢母良妻를 강요하여 여자의 투기를 七去之惡의 一로 교태를 요구하여 위안을 얻어 가면서도, 그 대우는 本妻와 현저한 차이를 두었으니, 夫의 妾에 대한 언사는 妾에 비할 수 없는 格 낮은 말이었고 妾子(庶子)에 대한 학대 또한 대단하였으며 先祖의 祭祀時에도 庶子는 거적을 깔고 뜰아래에서 祭祀參禮를 했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다.

遺習은 십지어는 같은 家門이라도 같은 마을에서 못살아 庶村을 이루고 庶孫끼리 살아야 했다.

慶州郡內의 한 實例를 보자. 內南面 伊助里는 月城崔氏의 嫡出子孫끼리 사는 부락인데 비하여 內東面挑盤里는 그 庶出子孫끼리의 동족 부락이다.

江東面 菊堂里의 權氏一族은 嫡出인데 비하여, 內南里 皇星里의 權氏一族은 그 庶出이다. 우리나라의 蓄妾史는 다름아닌 우리나라의 家庭悲史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蓄妾의 慣行은 오늘날도 이를 拂拭하지 못하고 뿌리 깊이 우리 가정 생활의 安樂을 위협하고 있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니 修身齊家를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治國平天下를 할 것인가.

한 가정 한 가정이 사회의 구성 단위요, 사회의 總和가 국가이니 蓄妾家庭의 수가 많은 국가가 부강하기 어려운 것은 明若觀火라 할 것이다.

어떻든 蓄妾을 한 남성이나 妾이 된 여성 다같이 本軌道에서 어긋난 異端者란 혹평을 면할 수는 없다.

우리 정부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생활의 근대화란 所得增大를 하여 문화 생활을 한다는 물질면뿐만 아니라 정신면의 근대화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끝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濟州道の 蓄妾의 慣行의 一掃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表裏를 이루고 있다고 思料되는데, 즉 여성의 법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蓄妾의 慣行은 자연 淘汰되리라고 確信한다.

그러면 여성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 문제는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성 자신의 자각과 꾸준한 노력의

소산으로만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에 남성들의 여성관의 개선 및 깊은 이해와 협조 없이는 여성들만이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언제까지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면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

첫째, 꾸준히 학문을 연마하여 남성의 지적 수준에 도달할 것이니, 大學을 졸업한 俊才들도 어찌된 일인지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고 어머니가 되면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하여 專攻書籍의 연구는커녕 新聞·雜誌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여 하루하루 退步—路를 걷게, 되니 이 원인의 정확한 것은 파악할 수 없으나 家庭管理上 능력 부족과 시설이 불충분한 환경에서 家事勞動을 하므로 인하여 초래되는 과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문제는 경제 문제가 수반되기는 하나 우리의 지혜로써 극복해야 되겠다.

둘째로, 有事時에 심히 주저함이 없이 단호히 일어설 수 있는 경제력의 확보인데,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일단 결혼하면 여자는 가정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나 남편 혼자 힘으로는 경쟁이 熾烈한 현 사회 체제로 보아 좀더 잘 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여성도 능력껏 생산의 역군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경제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셋째로, 그릇된 남성관 즉 남성의 不貞에 대한 지나친 寬容과 여성에 대한 그릇된 貞操觀 등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성의 법적 지위란 有名無實한 오직 法條文의 장식적 역할밖에 못한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가끔 있다.

甲男 乙女가 교제 내지는 同棲를 했을 때 甲男은 그다지 좋지 않고 乙女만이 不貞한 여인으로 가정 또는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는데, 甲男의 아내曰「우리 애기 아버지는 앞 전하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여자가 꼬리를 쳐 순진한 양반이 넘어갔다」는 말이다. 이렇게 오인하는 甲男의 아내라면 乙女보다 훌륭한 점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乙女 이상의 女性界의 害毒分子라 하겠다. 不貞을 저지른 책임이 어찌서 여성에게만 있단 말인가? 男女半半의 책임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鈍하다면 他女人에게 남편을 양보할 만큼 鈍할 수는 없겠는가?

俗談에 이러한 말도 있다. 「오죽 못한 남자가 외입 한번 못하고 제 아내만 바라고 살겠느냐」고. 이 사고 방식이 오늘날 우리 여성의 지위를 이렇게까지 전락시켜 놓은 원인이 된다. 이 말이 여성들 입에서 흔히 나오고 있음을 들을 때 한심하고 알밋기 限量 없다.

다음으로 남성의 여성관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 여성은 남편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강자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니 약자인 여성의 반려자로 여성의 성장을 위하여 善良한 協助者가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니 「암탐이 울면 집안이 亡한다」는 그릇된 판단을 止揚해 주기 바란다.

또 남편은 자기의 貞操觀은 극히 開放的이며 最尖端을 걷고 있으면서 여성에게만 不貞을

허용치 않고 필요 이상의 의심과 단속을 하는 我田引水格의 여성관, 정조관을 개선해 주기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여성의 全人格을 무시하고 玩具視하는 후진성에서 하루 속히 脫皮해 주기를 願한다.

이상의 여러 문제가 해결된다면 蓄妾의 慣行은 자연적으로 자취를 감추리라고 생각된다.

여성에게 절규하고 싶은 것은 蓄妾을 하여 二重 三重 생활을 하는 남성에게 高貴하고 眞實한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남성 심리를 분석해 보면 남성은 사랑을 分散시킬 수 있다는 어느 學者의 말이다. 그 반면 여성은 사랑을 分散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心理狀態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고로 남성은 蓄妾을 하여도 本妻와 妾 다같이 사랑이 가능하여 두 여성을 비교하여 其長點을 取擇하여 만족을 얻어 그 생활을 오히려 즐길 수 있으나 여성은 그렇지 못하여 만약 不貞을 저질렀을 때는 本夫와 情夫 다같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情夫에게만 사랑을 주게 되는 故로 及其也는 가정의 破綻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다음에는 남성에게 부탁하고 싶다.

蓄妾을 하여 여성을 정신적으로 모진 매질을 할 바에야 차라리 離婚을 하여 여성의 살길을 마련해 줄 용의는 없겠는가? 俗談에 있듯이 나물 먹고 물 마셔도 마음이 편해야지, 酒池肉林 속에서도 마음이 편치 못한 생활이라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으랴.

또 여성은 권리의 주장에만 汲汲하지 말고 자기의 의무를 다한 이후에는 남편의 蓄妾을 寬容하는 그릇된 博愛精神의 발휘를 止揚해 줄 것을 衷心으로 권하고 있다.

再言하건대 생활의 근대화란 精神面의 近代化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되겠다.